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036
----------	------

발의연월일 : 2021. 3. 23.

발 의 자 : 강민정 · 최강욱 · 김윤덕
이상헌 · 강득구 · 서동용
배진교 · 용혜인 · 김진애
조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부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해당 조항은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조항임. 따라서 시민들이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역량이 향상된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현재 교육감은 시민이 선출한 지방 교육 최고 책임자이므로 교육감에게 교육청 내 공무원 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부교육감을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대통령에게 있는 시·도 부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육감에게 이관함으로써 교육자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9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을 “소속하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를 “임명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교육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감이 부교육감을 임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보조기관) ① <u>교육감 소속</u> <u>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u> <u>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u> <u>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u> <u>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u> <u>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u> <u>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u> <u>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u> <u>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u> <u>보한다.</u> ② 부교육감은 <u>당해</u> 시·도의 교육감이 <u>추천한</u> <u>자를</u> <u>교육부</u> <u>장관의</u> <u>제청으로</u> <u>국무총리를</u> <u>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u> ③ ~ ⑥ (생 략)	제30조(보조기관) ① ----- <u>소속</u> <u>하에</u> ----- ----- ----- <u>「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u> <u>일반직·정무직 또는 별정직 공</u> <u>무원</u> -----. ② ----- <u>해당</u> ----- ----- <u>임명한다.</u> ③ ~ ⑥ (현행과 같음)